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문서

-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불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불임 1. (제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제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귀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질병관리청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주무관 **민승철** 보건사무관 **김도한** 지역의료혁신 전결 2025. 3. 5.

과장 **박은정**

협조자

시행 지역의료혁신과-295 (2025. 3. 5.)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86 팩스번호 044-202-3983 / msc99@korea.kr / 대국민 공개